

# 2011년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동물병원은 사용일 3일전까지 시·군·구에 신고

##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X-ray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또는 종사자, 동물병원 이용자의 방사선 위험을 예방하고 방사선발생장치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아래의 기기를 말합니다.

-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 X-ray(이동형 또는 포터블 X-ray 포함)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CT,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PET) 등
- 기타 방사선발생장치

##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에 따라 동물병원이 해야 하는 것은?

- ①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와 방사선 방어시설 최초 검사 실시(검사기관에 신청)
- ② 관할 시·군·구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 ③ 방사선발생장치를 작동하는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측정기관에 신청)
-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 마다 건강진단 실시
- ⑤ 관계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 ⑥ 동물병원내에 방사선구역 표시
- ⑦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보존
- ⑧ 3년마다 방사선발생장치 재검사 실시(방어시설 검사는 변경 또는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 초과시 실시)
- ⑨ 양도, 폐기, 이전 또는 사용 중단(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신고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관리사항 중 ③, ④, ⑤, ⑥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당 최대 동작 부하량(mA·min)

- 연중 방사선발생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1주 동안의 동작 부하량 합계  
= [최대관전류(mA)×최대조사시간(sec)×주당최대촬영건수]/(min/60sec)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가 부적합할 경우 불이익 조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

구분	내용	과태료/행정처분	관련조항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신고를 하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3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항
	신고를 하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0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1항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
피폭선량 측정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부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등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수의사법 제30조제2항

※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검사·측정기관 현황 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www.qja.go.kr → 업무마당 → 동물방역 → 동물약품 →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참조

